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8. 6 .

발 의 자 : 구자근 · 길윤옥 · 김상조
박세채 · 우진석 · 윤서규
이갑선 · 정근수 · 허 복
황경환(10인)

1. 제 안 이 유

-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 구미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기여코자 함

2. 주 요 내 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의사자 및 의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말함
- 적용범위(안 제3조)
 - 구미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 타 지역 사람이 시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 지원사업 등(안 제4조)

- 의사자 특별위로금 : 1천만원 이하
- 의상자 특별위로금
 - 1급, 2급 : 600만원 이하
 - 3급, 4급 : 400만원 이하
 - 5급~9급 : 200만원 이하
-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

○ 예우 등(안 제5조)

- 「구미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 구미시지 등 향토지 발간시 공적 게재 등

3. 참 고 사 항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 ①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 가. 1급, 2급 : 6백만원 이하
 - 나. 3급, 4급 : 4백만원 이하
 - 다. 5급~ 9급 : 2백만원 이하
3.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미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구미시지 등 향토지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준용 등)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법 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 "의사자(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4.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애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illegible]